

## 부속서 I

### 관세 양허표

#### 말레이시아

#### 두주

1.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관세명령 (Malaysian Customs Duties Order) (이하 이 양허표에서 “MCDO” 라 한다) 식으로 표현된다. 그리고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MCDO에 의하여 규율된다.
2. 이 양허표에서, 통화 단위로 표시된 관세율은 말레이시아 링깃(이하 이 양허표에서 “RM” 이라 한다)의 가장 근접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.
3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 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
4. “기준 세율” 열에 “TRQ” 로 표시된 세번은 이 양허표의 관세율 할당 대상 품목 목록에 명시된 대로, 해당 세번에 적용 가능한 관련 관세율 할당이 적용된다. 이 목록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에 기초한다.
5. 이 양허표의 관세 철폐의 비선형 진행은 검토 대상이며, 그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 부터 3년 내에 완료된다. 검토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모든 관련 세번의 선형 진행은 그러한 검토의 완료 후 3년 내에 개시된다.